

1. 개정 이유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일부개정(법률 제18426호, 2021. 8. 17. 공포, 2022. 8. 18. 시행)으로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과 관련된 서식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서식 기술지도계약서(별지제104호서식) 및 기술지도 완료증명서(별지제105호서식) 상단과 서명란에 계약 의무주체인 ‘건설공사 발주자 등’란을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별지

2) 입법예고(2022. 7. 26. ~8. 5.)

3) 행정규제 : 해당 없음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0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0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 부터 시행한다.

기술지도계약서

건설공사 발주자 등	성명 또는 사업자명		대표자		
	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사업장관리번호		
	주소		연락처		
	유형 (공공) [] 정부 [] 지자체 [] 공공기관 [] 지방공기업 [] 기타 국가기관 (민간) [] 기업 [] 개인				
기술지도 위탁 사업장	건설업체명		대표자		
	공사명		사업개시번호		
	소재지		공사기간		
	공사금액				
건설재해	명칭		대표자		
예방전문	소재지				
지도기관	담당자		전화번호		
기술지도	기술지도 구분	[] 건설공사 []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			
	기술지도 대가	원	기술지도 횟수	총()회	
	계약기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		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60조 및 별표 18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.

년 월 일

건설공사 발주자 등
사업주 또는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
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
자 (서명 또는 인)

기술지도 완료증명서

건설공사 발주자 등	성명 또는 사업자명		대표자											
	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사업장관리번호											
	주소		연락처											
	유형 (공공) [] 정부 [] 지자체 [] 공공기관 [] 지방공기업 [] 기타 국가기관 (민간) [] 기업 [] 개인													
기술지도 위탁 사업장	건설업체명		대표자											
	공사명		사업개시번호											
	소재지		공사기간											
	공사금액													
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	명칭		대표자											
	소재지													
	담당자		전화번호											
기술지도	기술지도 구분	[] 건설공사 []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												
	기술지도 대가	원			기술지도 횟수		총()회							
	계약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									
	실시 내용	회차	1	2	3	4	5	6	7	8	9	10	11	12
		실시일자	00월/ 00일	00월/ 00일	00월/ 00일	00월/ 00일	00월/ 00일	00월/ 00일	00월/ 00일	00월/ 00일	00월/ 00일	00월/ 00일	00월/ 00일	00월/ 00일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60조 및 별표 18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.					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					
건설공사 발주자 등														
사업주 또는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
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														
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